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447호(號) 1928(昭和 2)년 6월 26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45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27호(號)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(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),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, 조선(朝鮮) 내(內) 사설철도(私設鐵道) 화물연락운송규칙(貨物連絡運送規則) 중(中) 1928(昭和 3)년 7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8(昭和 3)년 6월 26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아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제3조(條)제1호(號)가의행(行) 중(中) 「33척(尺)」을 「68척(尺)」으로, 「20톤(噸·ton)」을 「30톤(噸·ton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3조(條)제2호(號)가의행(行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가 소화물급화물(小貨物扱貨物)로서 1개(箇)의 길이[長] 14척(尺), 중량(重量) 1톤(噸·ton), 용적(容積) 백(百) 입방척(立方尺)을 초과(超過)한 것 또는 차급화물(車扱貨物: 광궤선[廣軌線] 내[內]를 소화물급으로 연대[連帶]한 것을 포함[包含]함)로서 1개(箇)의 길이[長] 30척(尺: 광궤선[廣軌線] 내[內]를 소화물급으로 연대[連帶]하는 것은 18척[尺]), 중량(重量) 3톤(噸·ton) 혹은 용적(容積) 3백(百) 입방척(立方尺)을 초과(超過)한 것

제6조(條) 조선철도(朝鮮鐵道) 협궤선(狹軌線) 및 개천철도선(价川鐵道線) 내(內)를 차급(車扱)으로 연락(連絡)하는 화물(貨物)의 1구(口)는 5(噸·ton), 10(噸·ton), 15(噸·ton), 20(噸·ton), 25(噸·ton) 또는 30(噸·ton)에 대한 동(同) 철도선(鐵道線) 내(內) 운임(運賃)을 지불(支拂)한 것에 한(限)함.